

동두천시폐기물관리예안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1. 5. 30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 6. 5

다. 상정일자 :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5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반입료 및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가격이 낮기에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농·수산물폐기물에 대한 반입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함.
- 사업장폐기물 반입료를 톤당 17,000원에서 56,870원으로 인상함.
- 농·수산물폐기물 반입료를 톤당 20,000원으로 신설하여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현실가 보다 낮게 책정된 생활폐기물 반입료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농수산물 폐기물에 대한 반입료를 신설하고자 현 조례 별표의 쓰레기 봉투의 용량별 판매가격표와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품목 및 반입료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그 어느때 보다 중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때 쓰레기 감량화 유도과 처리비의 현실화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나 100% 정도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때에는 주민의 부담과 불만이 예상되므로 향후의 계획 등을 참고하여 폐기물 정책과 주민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반대토론 : 간두범 의원)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실가보다 낮게 책정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과 생활폐기물 반입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농수산폐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반입료를 톤당 20,000원으로 신설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봉투가격의 경우 일시적으로 100%정도를 인상할 때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을 줌으로 별표7의 쓰레기봉투가격을 현행보다 50%를 인상하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료는 동두천시장이 요구한대로 인상하되 조례 제23조 별표8중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수정코자 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 출 안	수 정 안
별표7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8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7은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표8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8중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료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쓰레기봉투의 용량별 판매가격

(제18조 제2항 관련)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가격 (가로x세로,cm)	판매가격(원) 제출안(100%인상시)	변경안 (50%인상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3	22 x 40	80	60
음식물쓰레기 전용	5	26 x 46.5	150	120
일 반 용	5	26 x 46.5	150	120
일 반 용	10	33 x 56.5	290	230
음식물쓰레기 전용	20	42 x 69.5	570	450
일 반 용	20	42 x 69.5	570	450
일 반 용	50	56 x 91.5	1,400	1,050
일 반 용	75	65 x 103.5	2,200	1,650
일 반 용	100	71 x 113.5	2,800	2,100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전용포대	50	60 x 100	4,000	3,000